

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성함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 경, 김기덕,  
김성준, 김인제, 박강산,  
박승진, 박칠성, 봉양순,  
서준오, 송도호, 아이수루,  
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  
이승미, 이영실, 이원형,  
임규호, 임만균, 정준호,  
최재란, 한 신 의원(23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마을버스 노선에 부득이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복 정류소 제한을 개별 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 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행규칙 제8조제4항”을 “시행규칙 제8조제7항”으로 한다.  
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시행규칙 제8조제4항”을 각각 “시행규칙 제8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~ ⑦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시행규칙 제8조제7항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다만,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제4항 중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 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제4항 중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이 정 수
추계분석관	김 지 혜
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